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02712(본소), 2021다202729(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02712(본소), 2021다202729(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0847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판결 선고 2024. 5. 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08478(본소), 2020나 2008485(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반소피고)들과 E 사이에, E이 망 F 명의 재산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의 상속포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약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